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기 관 명 (부 서 명) | 국토교통부 (공공택지기획과) |
| 연 월 일 | 2021. 5. . |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본청약보다 1~2년 분양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시행하는 사전청약제 적용 대상을 「공공주택 특별법」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거나, 「택지개발촉진법」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, 「도시개발법」 등 다른 법률에서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에도 사전 입주자모집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협의 전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7항 전단 중 “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으면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
2. 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
3. 「택지개발촉진법」,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, 「도시개발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계획을 승인을 받는 경우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13조(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)</p> <p>① ~ ⑥ (생략)</p> <p>⑦ 공공주택사업자는 <u>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으면</u>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(이하 “공공분양주택”이라 한다)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을 선정하여 입주예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입주예약자의 모집·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p> | <p>제13조(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등)</p> <p>① ~ 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⑦ 공공주택사업자는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</u>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공분양주택(이하 “공공분양주택”이라 한다)의 입주예약을 사전에 신청 받아 입주예약자를 선정하여 입주예약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입주예약자의 모집·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p> <p>1. <u>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</u></p> <p>2. <u>법 제3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</u></p> <p>3. 「<u>택지개발촉진법</u>」, 「<u>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</u>」, 「<u>도시개발법</u>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계획을 승인을 받은 경우</p> |